

□ 서류전형 배점표

구분	성적	자격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	우대·가점	합계
실무직	35	15	2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자격: 심사면제 ▪ 경력: 3~5 ▪ 공모전·경진대회: 2~3 ▪ 사회형평: 5 	100

* 사회형평: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지역인재(5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10점)

○ 서류전형 경력가점 기준(최고점수 1개만 적용)

구분	공공기관 청년인턴 (공단 포함, 4개월 이상)	공단 근무경력 (기간제근로자 포함, 상근직에 한함)	
		6개월 ~ 1년	1년 이상
가 점	3	4	5

* 단,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서류전형 공모전·경진대회 가점 기준

(공단 본사·자동차안전연구원 주최에 한함, 최고점수 1개만 적용)

구분	장관상 이상	기타 입선
가 점	3	2

□ 성적 반영기준 ※ 지원서에 반드시 입력

구분	점수 부여 기준	비고
학교교육	직무 관련 전공과목 이수학점 당 2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 과정은 단위수 당 2점)	최대 35점 ▪ 사외교육은 수료증 발급 교육에 한함 (교육 이수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사외교육	직무 관련 교육 10시간 당 1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 과정은 단위수 당 2점

□ 자기소개서 채점기준

평가기준	배점	채 점 기 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아이디어 개발, 개선 노력 (5점)	5	5	4	3	2	1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5점)	5	5	4	3	2	1
타인과의 협력 도출을 위한 노력 (5점)	5	5	4	3	2	1
공단 업무에 관한 주관과 비전 (5점)	5	5	4	3	2	1

□ 경력(경험) 기술서 채점기준

평가기준	배점	채 점 기 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	10	10	8	6	4	2
직무 관련 경력개발(과목 이수) 노력	10	10	8	6	4	2
직무와 경력·경험의 유사성	10	10	8	6	4	2

□ 서류전형 시 점수를 부여하는 자격 종류

구분	자격증(점수)
실무직(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5점, 산업기사 3점]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보안, 교통 ▪ [1급 5점, 2급 3점] 세무회계, 기업회계, 전산세무, 전산회계 ▪ [3점] 교통안전관리자, 도로교통안전진단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1종 대형 면허, 2종 소형 면허
실무직(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5점, 산업기사 3점]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가스 ▪ [3점] 1종 대형 면허, 2종 소형 면허
실무직(시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5점, 산업기사 3점]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소방설비(기계/전기), 승강기, 전기공사, 전자, 초음파비파괴검사
실무직(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국가 공인 CS 리더스(관리사)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5점, 2급 3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급 5점, 2+급 3점, 2-급 2점] 한국어능력시험(KBS)

* 동일 자격 중복소지자는 상위 1개 인정(예: 전산세무 1급, 2급 소지자는 1급만 인정 / 운전 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소지자는 대형만 인정)

* 응시자격에 포함되는 필요자격은 점수 가산 없음

□ 특수자격 인정범위

구분	특수자격	배점
실 무 직	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공인노무사, 해당분야 기술사, 해당분야 박사, 고시 최종 합격자	서류전형 면제

장애유형 및 등급			편의지원 내용
			면접시험
지체장애	상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정도가 심한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뇌병변장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정도가 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진단서 필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시각장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정도가 심한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기존 5급2호, 6급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기타	임신부 (의사소견서 증빙)		-

○ 신청방법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
- * '19.7월 이전 발급된 장애인증명서(장애등급이 구분된 서류) 등의 경우 채용사이트 또는 채용 담당부서에 개별 문의
-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표시
- 원서접수 후 전형단계별로 편의제공 여부 별도 통보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업무처리세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용 이의신청서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지원분야	연락처	
		이메일	
이의제기 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이의신청은 각 채용전형별 피해자 구제방안 등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는 지원자 본인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2. 지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본인의 점수, 합격자 평균 점수, 합격선, 시험문제, 면접기법 등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3. 차기 채용여부 등 단순 질의·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4. 이의 신청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이후 다음 날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은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덧붙임 6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